「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08월 23일 김성기 의원이 발의하고, 2022년 0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나.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다. 불법촬영 예방사업 실시 및 사업 추진단체 지원 (안 제5조 ~ 6조)
- 라. 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(안 제7조)
- 마. 실태 조사 및 신고체계 등 구축 (안 제8조 ~ 9조)
- 바. 교육 및 홍보 (안 제10조)

3. 검토의견

O 본 조례안은

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최근 보편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변형 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누구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

당위성이 있다고 보며,

○ 또한, 불법 촬영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목욕실,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, 기존 지자체 조례시행범위인 '공중화장실'에서 '다중이용시설'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.

O 관련 입법례로

<u>다중이용시설</u>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가 있고 도 내 4개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(강릉, 삼척, 영월, 화천)

O 검토결과,

상위법 위반 등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